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 사업장 재모집 공고

도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은 신청 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17.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 모집대상: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지원기관(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지원기관·단체) 도내 사회적경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단체)<sup>\*지자체 소속 제외</sup>
- 모집규모: 최대 6개사 모집(청년혁신가 6명 모집예정)
- 지원내용: 인건비(매월 200만원/인)·교통비(매월 10만원/인) 지원<sup>\*입사일 기준 2년</sup>  
*※ 매월 인건비의 10% 및 4대 사회보험료는 사업장 자체 부담*

### 2 사업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청년에 대한 구인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과 연계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사회적경제조직/ 단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영업 중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단체</li> <li>• 도내 사회적경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소속 제외</li> </ul> </li> <li>•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단체(기관)은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지원 실적 증빙</li> </ul> </li> </ul>
신청 제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li> <li>• 국가 및 자치단체</li> <li>•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li> <li>•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한정</li> </ul> </li> <li>•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li> </ul> </li> <li>•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li> <li>•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li> <li>•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여부는 지자체장 판단)</li> </ul>

## □ 지원내용

- (1~2년차)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 역량강화 + 지역자율지원(최대2년간)
  - 지역 내 기업 등 채용 연계,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임금의 하한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이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창업(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최대 1년)

※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거주(전입) 정착 충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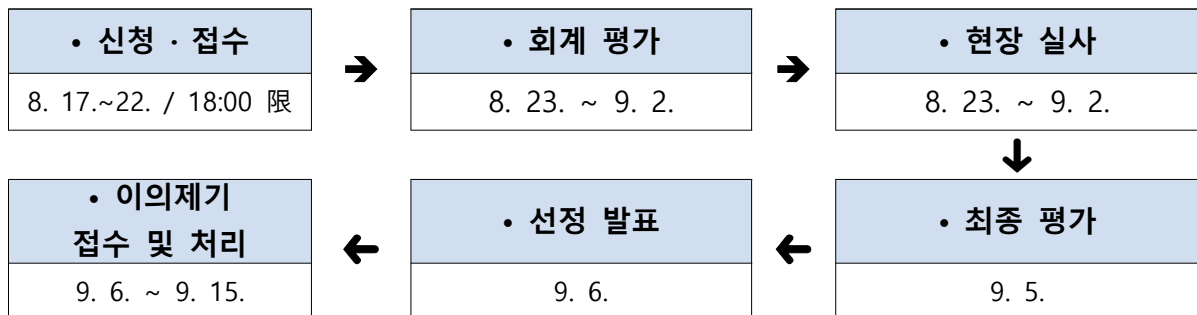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해, 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른 임금 인상 적용 장려

□ 준수 사항

- 청년-기업-지원기관-지자체 4자 협약을 통해 참여 사업장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 인정
  -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 자체 부담
- 청년혁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등의 모든 활동은 **공가 처리** 대상으로 사업장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4 추진 일정 및 선정 기준**

□ 추진 일정



○ 세부 진행 일정

- 신청접수: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 접수
- 서류검토: 제출 서류 검토 후 필요 시, 보완 요청 등
- 회계평가: 회계 전문 법인을 통해 제출 서류 분석 및 평가(정량평가)
- 현장실사: 기업 내 근무환경 및 청년혁신가 활용 계획 인터뷰 등
- 최종평가: 제출 서류 및 현장 실사 수행일지를 토대로 평가(정성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 및 감점사항을 적용하여 최종 검토 후, 참여 사업장 선정 및 적합 인원 결정
  - ※ 최종평가간 필요 시, 전화 연결을 통해 추가 질문 실시
- 선정 발표: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 공지

## □ 선정 기준

- 청년이 주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과업을 제시하고 보장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및 전담 인력(멘토) 보유
- 사업 종료 후 참여자 고용 승계 및 지역 일자리 연계를 지원
- 사업개시일 기준 정부 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등 우대
- 사업 참여를 위해 임의적인 해고·해직이 발생한 사업장 참여 제외

## ○ 참여 기업 선정 방법 및 평가 항목

- 참여 기업 선정 방법: 평가 결과 고득점순 선정

- 정량 평가(40점) + 정성 평가(60점) + 감점 사항(0~-20점)

※ 평가 위원 과반수가 부정적 의견 또는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사항	배점
정량 평가	경영 안정성	향후 사업 지속 운영 가능성	20점
	재정 우수성	기업의 재무 건전성	10점
	인력 활용 가능성	경영·재정 상황을 토대로 한 인력 활용 가능성	10점
정성 평가	사업장 발전 가능성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향후 사업계획	20점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사회적 환원을 위한 노력	20점
	인력 활용 우수성	채용 인원 활용계획의 타당성, 정규직 채용여부,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20점
<b>합계</b>			<b>100점</b>

- 감점 항목

구분		판단 기준*	배점
감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5~0점
		이전 사업 참여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5~0점
	부정수급 이력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有	참여배제
	계속고용의지	최근 1년이내 인원 감축 현황	5~0점
	기타 자치단체 판단	기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부적격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최근 고용원 감축, 자본상태 등)	5~0점

\*시행지침에 의거한 판단기준

## □ 추후 일정

○ 청년혁신가 모집 및 협약

’22. 9. ~

○ 청년혁신가 기본교육\*

’22. 10. 中

※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신규 참여 청년혁신가 대상 10시간이상 교육,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초과근로 수당, 근무장소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계약(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체결함으로써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휴일과 휴가 등은「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
- 사회적경제 사업장은 별첨 「사회적경제 청년활동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되,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 사업장은 활동근로계약 전에 청년혁신가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내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년혁신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함
- 활동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혁신가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장과 청년혁신가 사이에 시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장은 활동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청년혁신가와 협약체결 자치단체(소속 시장·군수), 지원기관에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임금은 월 1회 지급(매월 말일,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급여일자 변경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4대 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 부담(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
  - 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의 경우 사업개시

당시 시행지침의 연속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

- 시행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시행함
- 지원 제외 일자리 유형

○ 지원 제외 일자리 유형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接客·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6** 제출 서류 관련 사항

- 접수기간: 2022. 8. 17.(수) ~ 22.(월) 18:00 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청년혁신가.kr>)
- 제출서류
  - 2022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장 참여 신청서\*<sup>[별첨 1]</sup>
  - 사회적경제사업장 인증(지정)서\*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첨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 사업장(기관/단체) 정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사업 및 사회적경제 업무 추진 실적자료
- 보안 사항 및 비밀 준수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비밀 준수